

기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

농림수산식품부

1.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편

가. 초동 대응체계 강화

■ 초기 진단 기능 및 통제 강화

-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시·도 방역기관에 항원 진단키트 보급 및 권역별(중부·영남·호남) 거점 정밀분석실 설치
- 발생 초기단계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
 - Standstill : 해당 농장의 분뇨·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강력한 초기 이동통제 실시

* 접종 중인 백신과 동일한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에는 해당농장만 이동통제
-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백신접종 시나리오 마련

■ 중앙·지방·군(軍)간 공조체계 구축

-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*를 설치하여 발생시 긴급 투입

* 가축질병 발생시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을 위해 농식품부, 시·군, 가축위생
방역본부, 지역 군·경, 축협 등으로 구성(비상설 기구)

-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 초기지원 제도화

■ 평시 대비태세 강화 및 방역 전문 인력 양성

-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(CPX) 실시

- 현장 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

* 예방접종, 매몰지관리 등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마련

나. 국경검역 강화

- 공항 및 항만 검역시스템 강화
- 소독대상 확대 : 축산인 → 축산관계자 및 일반국민(필요시)
 - (축산관계자)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시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, 입국시에는 검사·소독 의무화
 - (일반국민) 발생국가 축산시설 방문 시 검사·소독 실시
- 축산관계자 D/B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, 입국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
 - * 축산관계자 D/B : (2010. 5) 86천명 → (2011. 3) 103천명
- 농축산물 반입 관리체계 강화
-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-ray*,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차단
 - *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상시 일제검사(1일 2편) 체계로 전환(2011. 3월)
- 가축질병 대응 국제 협력 강화
- 국제세미나 개최, 공동연구, 관련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중국, 일본 등의 수의·방역 당국간 정보 교류 실시
 - 구제역·AI 등 가축질병 관련 한·중·일 공동연구위원회 설립 및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

영 방안 등 검토

-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 전문가를 추가 파견(현재 1명)하여 가축질병 원인 연구 및 관련 정보 입수 등을 활성화

다.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상시예찰 강화

- 축산농장, 관계자 및 차량에 대한 상시 관리·점검 체계 구축
- 축산농장 출입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
-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및 시·도(시·군) 간 경계 통과 시 소독방안 검토
- 축산농가-생산자단체의 자율방역체계 구축
- 농협중앙회·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중앙-지방 방역조직과 연계
- 민간 전문가, 우제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'구제역 박멸대책위원회'를 구성하여 자율 방역 계획 수립·추진
 - 생산자단체가 방역 홍보, 위원회 운영비 등 방역 비용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실질적 책임 담보
- 소규모 축산농가는 인접농장과 자율방역대 구성·운영

- 외국인 근로자의 철저한 관리
-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 · 소독 의무화
- 축산농장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,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법 외국인력 적정 공급 추진
 - * 2011년도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 : 4,500명(전체 인원의 9.3%)

라.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

-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 마련
- 상황별 · 발생시기별 · 규모별 적정 보상기준 마련
- 가격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 방지를 위해 보상폭 설정
 - * (예) 가격 급등시에도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% 초과분까지만 지급
-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백신비용 부담 추진
 - 대상농가,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
 - * 백신 미접종시 과태료 부과,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 보상금 감액
- 매몰보상금 지급시 지자체 책임분담 추진
-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매몰 보상금 등 일부 부담

- 지자체 방역활동과 연계,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지원 차별화 추진
 - 각종 농림사업 정책자금 지원 차별화, 지자체 평가 등에 반영
- 방역의무 이행여부와 정책자금 지원간 연계 강화
- 차단방역 시설(울타리, 소독 · 샤워시설 등)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배제 추진
- 백신접종에 따라 생계안정자금, 가축임식자금 등 지원 합리화

마. 친환경적 감염가축 처리 방안 강구

- 단순매몰 방식에서 소각 · 렌더링 등 처리방법 다양화
- 매몰지에 대해 3년간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분석 강화
- 매몰지 종합정보지도 시스템 구축, 환경영향 분석 등에 활용
-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, 매몰처리 관련 규정 보완 등을 통해 환경문제 최소화

바. 방역조직 체계 개편

- (중앙 방역기관) 농 · 축 · 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*을 통합한 ‘농림

수산검역검사본부' (가칭) 설립

- *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국립식물검역원, 국립수산 물품질검사원
- 공통부서 인원을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위기대응과 등 신설
-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(5개소)를 설치하여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력 제고
- (지방 방역기관) 시 · 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, 유사시 중앙조직과의 연계 강화
- 지방방역기관 연구 · 검사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 및 기능 강화
- 주요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중앙 방역기관의 지휘 · 관리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
- 방역능력 제고를 위해 수의과대학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 강화
- (IT 기술 활용) 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 조기 구축(2012년)
- 국경검역 등 범정부적 통합방역 관리체계 확립
 - 축산농장 및 수의사 · 사료차량 등 축산관계자 DB 구축 및 현행화
- 과학적 방역 및 초동방역 서비스 체계 구축
 - 가축 및 축산관련 차량의 실시간 이동 상황을 파악, 초동방역 및 역학정

보와 연계

- 지자체 등 방역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상시예찰체계 구축

2. 예방접종 계획

■ '백신접종 청정국' 지위 획득을 목표로 추진

* 신청요건 : ①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
② 구제역이 최근 2년동안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, ③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

- 3차접종(약 2,100만두분)은 2차접종 6개월 후 전두수 재접종

* 1,600만두분(새로 태어난 송아지 · 자돈), 500만두분(기 접종가축 3차 접종)

- 다른 유형(총 7개)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및 인접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A, O, Asia1형을 혼합한 백신 접종

- 자가접종 매뉴얼 마련 및 교육 강화

- 백신 접종주기 및 시기, 백신 공급방법, 접종가축 검사방법 및 방역주체별 행동요령 등 구체화
- 3차접종전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실시

■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예찰검사 및 관리 강화

- 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내에 '구

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'을 구축하여 백신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(2011. 6월~)

* 소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, 돼지는 농장단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

■ 백신 전문 연구센터 설립 및 국내 백신 생산 검토

- 백신의 핵심 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 및 검정체계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표준연구소 기능 수행
- 민·관 구제역 바이러스 공동 연구 추진
- 종자바이러스 개발, 백신제조기술 등을 감안해 국내 백신생산 검토

3.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

- 2012년부터 축산업 혁신제 도입
-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하고,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 지원(신규농가는 즉시 시설 설치)
 - 대상농가에 대해 기록관리, 적정사육 두수 준수여부 계속 관리
-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육 강화

* 등록기준 : (현행) 소 300㎡, 돼지 등 50㎡ 초과 사육시설 → (개선) 모든 농가

* 등록축종 : (현행) 4종(소, 돼지, 닭, 오리) → (확대) 모든 가금류·우제류
- 정책자금 지원 및 매몰보상금 지원 등과 연계, 실효성 제고

○ 대상·시기·방법 등 구체적인 혁신제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

■ 친환경 축산업 육성

○ 사육·운송·도축 단계를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 인증, 친환경 인증 농장 제도 등 정비

■ 축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

○ 분산 설치·운영 중인 축산관련 전후방 산업(도축장, 사료공장 등)을 지역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 차단

○ 도축장, 분뇨처리시설, 돼지 인공수정 센터 등 관련시설 통폐합에 따른 폐업 지원 등 추진

○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 지원 확대

* 재입식 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비 300억원 우선 배정(축사시설현대화사업) 